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09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김위상 · 권성동 · 조지연
윤한홍 · 김종양 · 김대식
박성훈 · 안철수 · 신성범
김선교 · 송석준 · 김도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정기검사)”를“(정기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적합성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

제43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적합성 심사
제50조 중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적합성 심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
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2. ~ 4. (생 략)

② (생 략)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
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
기설비의 검사

<신 설>

3. · 4. (생 략)

③ (생 략)

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

1. -----제11조제1항-----

1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태양
광발전설비 적합성 심사를 받
으려는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

2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태양
광발전설비의 적합성 심사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p>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p>	<p><u>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u> <u>른 태양광발전설비의 적합성</u> <u>심사</u>----- ----- -----.</p>
---	---